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경제부 · 사회부
 발 신 경제민주주의21
 일 시 2022. 08. 24. (총 2 쪽)
 문 의 전화 | 010-3060-1917 이메일 | econdemos21@protonmail.com
 제 목 [보도자료] 경제민주주의21,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태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경제민주주의21,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태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 손태승 대표이사 개인 소송비용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대납 의혹 확산
- 대법원 판례상 회사가 구성원 개인 소송비용 지출 불가하며, 회사가 지
 불하면 횡령에 해당
- 은행 등 관계사 법률자문 쪼개기 및 비용지출 내역 반드시 수사해야

1. 오늘(8/24), 경제민주주의21(대표 : 김경울 회계사)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태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손태승은 최근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하여,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https://bit.ly/3wpl1sN>)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손태승의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https://bit.ly/3c9nq5j>) 또한 지난 7월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우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하여 (<https://bit.ly/3Cur5p7>), 손태승의 소송비용을 두고 횡령 의혹이 강하게 확산하고 있다.

2. 판례에 따르면,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에 한하며,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또한 우리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감독자 손태승의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개인을 적시한 중징계다.
3.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경고 이후, 2021년 8월의 1심과 2022년 7월의 2심에서 손태승은 모두 승소하였다. 이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가 상당 기간 소송대리인을 맡아 왔으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이 추단된다. 그동안 기업의 법률자문 등 갖가지 명목으로 나뉘어서 기업이 총수의 변호사비를 ‘대납’ 한 사건들이 공공연히 발생해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관계사들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의 법률 자문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시점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역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는 법률자문비 위장 변호사비용 쪼개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붙임: 고발장

[붙임]

고 발 장

고 발 인 김경율

피고발인 손태승

2022. 8. 24.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 ○ ○ ○, ○ ○ ○

(T. 00-0000-0000, F. 00-0000-0000,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김경율
 서울 ○○구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 ○○○, ○○○
 서울 ○○구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이메일:

피고발인 손태승(000000_1)
 성남시 ○○구
고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 발 취 지

고발인 김경율(이하 ‘고발인’이라고 합니다)은 피고발인 손태승(이하 ‘피고발인’이라고 합니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준엄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사건 관계인의 지위

고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정치권력과 재벌로 상징되는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를 모임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경제민주주의21 대표입니다.

피고발인은 2017. 12. 22.부터 2020. 3. 24.까지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8. 12. 28.부터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증 제1호증의1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제1호증의2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발인에 대한 징계처분

우리은행은 투자중개업자로서 2017.경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라 합니다)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습니다. 증권사가 발행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상품을 자산운용사가 펀드(DLF)로 운

영하고, 우리은행은 위 DLF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증개하여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19년 판매한 사모펀드인 ‘독일국채금리연계 DLF’(이하 ‘이 사건 DLF’라 합니다)의 손실률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자, 2019. 8. 23.부터 2019. 11. 1.까지 우리은행의 ‘DLF 상품선정 및 판매 적정성 등’에 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 3. 5. 우리은행에 “우리은행의 투자증개업 영위 과정에서 (1) DLF 불완전판매,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3)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발인에게 임직원(행위자)들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독자’로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금융감독원의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DLF의 불완전판매라는 금융사고와 그로 인한 대량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

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60238 판결 참조).

나. 피고발인의 변호사 비용 횡령 의혹

피고발인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개인의 취소소송에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상당기간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법원이 피고발인의 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경험칙상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만 최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단됩니다.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측에 피고발인의 위 소송에 따른 법률경비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증 제2호증 2022. 5. 29.자 ‘금감원 검사 ‘본말전도’...손태승 소송비 관심_연합인포맥스).

또한 2022. 7. 28. 진행된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소송 비용이 500만원이라는 이야기부터 250억원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하였습니다.¹

현재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측은 국회의원의 거듭된 피고발인 관련 소송비용 자료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피고발인의 소송비용에 대한 횡령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가 있어,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단체의 대표자 개인의 소송사건의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한 횡령죄 관련법리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¹ <https://bit.ly/3QRdxl7> 링크 영상 참조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가 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검토

가. 관련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

계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 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피고발인의 횡령

1) 행정소송 판결의 취지

피고발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용되었으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발인은 본인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업무 관련 행위자인 임직원들에 대하여 직제상 직속 감독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주체는 우리은행이고,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할 인적 주체는 1차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이다. 더구나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상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내부통제기준 작성 실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근 상급자인지와 관계없이 원고1(피고발인)은 내부통제기준 작성업무에 대하여도 감독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은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내부통제기준 작성업무에 대한 감독자의 지위에서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실을 총 5개의 항목(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으로 나누어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발인을 처분하였는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상품선정위원회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선정·교체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의 위반 부분은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항목의 경우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 문제점으로 보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 위반사실만으로는 향후 3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2) 법리의 적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이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은 우리은행이 당사자가 된 소송이 아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독자인 피고발인

개인을 당사자로 한 처분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판결에 비추어, 피고발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것(상품선정위원회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선정·교체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임은 명백한바 피고발인이 대표이사로서 우리은행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로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님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큰 규모의 기관이나 금융회사들이 보통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행정소송과 관련해 지원된 비용이 우리금융지주나 우리은행의 내규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만일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에 이른다면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율되어야 합니다.

다. 소결

이상의 이유와 같이 피고발인이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우리금융지주 또는 우리은행이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5. 수사시 요망사항

소위 대기업에서 기업 총수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공공연히 발생하였고, 그 지급 과정이 회사의 법률자문 비용으로 쪼개어 우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시점으로부터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관계사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에 대한 법률자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반드시 수사되어야 합니다.

6. 결어

자본금과 예금을 융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의 돈은 결국 주주나 고객들의 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를 피고발인이 개인의 소송행위를 위해 지출한 행위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사모펀드 피해자를 비롯해서 고객 피해를 배상해야 할 때마다 횡령, 배임을 언급하는 경영자가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비용을 지주회사나 은행에서 지출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명백한 횡령, 배임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바,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증 제1호증의1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제1호증의2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제2호증	2022. 5. 29.자 ‘금감원 검사 ‘본말전도’...손태승 소송비 관심_연합인포맥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고발대리위임장	1통

2022. 8. 24.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 ○ ○ ○ (직인생략)

변호사 ○ ○ ○ (직인생략)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